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5-32
----------	-------

2025. 4. 24.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한선미 의원 외 7인

나. 제 안 일 : 2025. 4. 11.

다. 회 부 일 : 2025. 4. 11.

2.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에 따라 폐의약품을 포함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수거와 처리 활성화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됨.

3. 주요내용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를 신설(안 제2조제12호)

나.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의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의2)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부칙 안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및 동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 : 2025. 4. 4. ~ 2025. 4. 10.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배경

-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그 처리에 대한 책임이 구청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생활폐기물에 비해 배출량이 적고 품목이 다양하여 처리 방법의 특성상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구민의 건강 보호 및 환경 위해 요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나. 주요 조문 검토

- 안 제2조제12호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를 규정함에 있어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제1항을 인용함.
- 안 제12조의2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평가하도록 구청장의 관리책임을 규정하고 구민의 배출 방법과 정기 수거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

다. 종합의견

- 현행 조례 체계상 ‘생활계 유해폐기물’(폐의약품, 수은함유 폐기물 등)은 ‘일반 생활폐기물’과는 달리 구체적인 배출 기준과 처리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수거 체계가 일관성이 없고 구민의 혼선을 발생시키고 있음.
- 또한, 폐의약품과 같은 특정 유해폐기물은 부적절한 배출로 인해 수질 및 토양 오염, 2차 감염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아울러, 기존 「서울특별시 마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현행 폐기물관리 조례와 병행 운영하고 있었으나, 행정력의 낭비 및 조례
관리와 집행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고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와 처리방안이 규정되어있어 이를 반영한
자치법규의 개정 활동으로 법령 정합성 측면에서 타당함.
- 다만, 폐의약품과 수은 함유 폐기물에 대한 정기적 수거 및 전용 수거함
설치·유지를 이행함에 있어 예산 확보와 인력 운영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구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구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민간자원 연계 및 협업을
강화한 행정 추진계획이 필요해 보임.

[관 계 법 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 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30.>

1. 폐농약
2. 폐의약품
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4.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벵크렐 미만인 폐기물(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5년 주기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중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추진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추진성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제2항 전단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정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